

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가단325345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최원진

피 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찬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B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4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1. 3.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회사(설립 당시의 상호: E 주식회사, 2016. 10. 5.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2013. 10. 11. 축산물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원고는 신규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2013. 10.경 G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1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발행하여 명의대여자인 H(G의 아들), I, J 명의로 각각 4,000주, 3,000주, 3,000주를 등재하였다.

피고 B는 2014. 12. 31. 원고로부터 위 10,000주를 100,000,000원에 매수한 후 자신과 명의대여자인 K(피고 B의 아들), L(피고 B의 지인) 명의로 각각 3,000주, 3,000주, 4,000주를 등재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4. 12. 31.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2019년까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맡겼다. 원고 회사의 직원 겸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M은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M의 요청에 따라 2018. 11. 30.부터 2020. 3. 2.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급여와 퇴직금 합계 48,600,000원(= 급여 2,500,000원 × 재직기간 16개월 + 퇴직금 8,600,000원)을 M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 4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M의 급여와 퇴직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3.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1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 주식은 액면가와 시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크고, 더욱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적이 없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B가 매매대금이 100,000,000원에 이르는 주식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사후에라도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약 6년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 그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매매대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증인 G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돈이 없었고 자신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피고 B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19년까지 피고 회사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한 주식 변동 내역(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을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M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및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M은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16개월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2) 피고 회사와 M 사이에 급여가 2,500,000원인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피고 회사가 M에게 매월 급여로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M은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연말정산을

받았다.

3)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M을 고용하였고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사무실이 같았으며, 원고 회사는 M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었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M이 원고 회사의 직원과 피고 회사의 직원을 겸한 것으로 신고된 기간은 2016. 4. 1.부터 6. 30.까지 3개월에 불과하지만, 위와 같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사무실이 같았다면, 실제로는 M이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양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고, 원고가 이를 고려하여 M과 급여 등을 약정하고 회계처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양 회사 중 일방에서 급여 등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원고의 주장논리에 의하면, M은 양 회사로부터 각각 월급 2,500,000원씩 합계 5,000,000원 정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위 금액은 양 회사가 M으로부터 근로시간의 절반 정도씩 근로를 제공받았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거나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